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

[2023년 하반기]

2023. 11.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조세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02-3497-105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1

1. 기본 방향 1

2. 주요 추진과제 2

II. 조세감면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6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6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7

III. 2023 세제개편(안) 11

1. 주요 내용 11

2. 상세 내용 14

I.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1

기본 방향

- 국세청은 지난 1년간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23년 하반기에도 그간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 추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납세편의 제고

- 01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02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민생경제 지원

- 03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04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공정과세 실현

- 05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06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소통문화 확산

- 07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①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세수관리)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 (홈택스 개편)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22.8월 구성)」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 추진

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Ⅰ

- ▶ 사업자등록 신청 개선 (대화형 신청방식 적용,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
- ▶ 홈택스 포털 개선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 ▶ 챗봇 기능 정교화 (안내문구 개선, 처리기능 추가 탑재 등)
- ▶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개발

- (세금비서 확대) 일반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서비스 제공
- * ① 확정신고서, ②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공공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납세서비스 제공 예정(총 10종)

②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 (권리보호 지원 강화)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 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 (포상제도 개편)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Ⅰ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주요 개편 방향 Ⅰ

-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 ▶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 ▶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 ▶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③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체계적 지원)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 지속 실시
 -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주요 세정지원 Ⅰ

공통	유동성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지원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추가	맞춤형 세무상담	▶ (수출·신산업기업)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 (구조조정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상담지원

- (세무검증 부담 완화) 수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 발굴
 - * (수출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50% 이상, 관세청·KOTRA·무역협회 선정기업 등
 - (영세자영업자) 외부조정 수입금액(도소매 6억 원, 제조음식 3억 원, 서비스 1.5억 원) 미만
- (공제감면 컨설팅) 지방청별 설치된 전담팀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하는 공제·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컨설팅 제공
 - * 세액공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④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 (장려금 신청·지급)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지급(8월 말)
- (환급금 안내·지급) 최근 5년간('18~'22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신속히 지급

5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세무조사 운영방향)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600건까지 축소하여 운영
 -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계획) 13,600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 완화
- (탈세 엄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

Ⅰ 주요 탈루 유형 Ⅰ

불공정 탈세	▶ 전환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 특수관계자 간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민생밀접 탈세	▶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며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현금수입업종
신종산업 탈세	▶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들의 수입신고 누락 ▶ 가상자산 발행수입 누락, 탈루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 등 탈세행위

- (역외탈세 대응)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하여 엄정 대응

Ⅰ 신종 역외탈세 주요 유형 Ⅰ

▶ (가상자산) 해외 현지법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발행·거래 관련 수익 은닉 ▶ (고가동산)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은닉한 국외재산을 유동화하고, 편법 증여 ▶ (황금비자) 해외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통한 국외 재산 은닉 및 관리
--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 실시
- (조세회피 근절) 이전가격 조작, BEPS 관련 이자비용 공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역량을 강화하여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
- (전략적 체납관리)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하여 추적조사 선정
 -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

하는 고액채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6]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공익법인 관리)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 실시
 -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검증을 강화(분석기법 개선, 검증항목 추가)하고,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
- (거래질서 확립)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 강력 대처

7]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업무혁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 (공직문화)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 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보도자료(“23.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조세감면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 (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 ☐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 ☐ (컨설팅 제공)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 (제도 혜택)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됨

- (제도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시행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방법)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 (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사전심사 신청(재신청)
 -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제출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증 서류 예시 >

항 목		서류 예시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공통증빙	인 적 구 성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증빙	인 건 비	급여대장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수탁개발비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 (심사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

①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② (비용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

기술종류	정 의	검 토 기 관	
		기술·비용검토	기술분류*
일반 연구·인력 개 발 비	(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국세청	-
	(인력개발비)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분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심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taxcredit.kiat.or.kr>)에서 신청 가능

□ (심사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 확인 실시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결과 통지

□ (재심사)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업무 흐름



- (제도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됨
-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고 있음
-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일 연 연구·인력 개 발	(1) ㉠과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text{Min} \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2\% \right)$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연 구 개 발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30%	㉤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text{Min} \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right)$		
국 전 략 기 술 연 구 개 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 + ㉧)		
	㉦ 40%	㉦ 30%	
	㉧ $\text{Min} \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 \right)$		

-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Ⅲ. 2023 세제개편(안)

1

주요 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조특령 별표7·7의2)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25~35%, (R&D) 30~50%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16~28%, (R&D) 20~40%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R&D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23.8월 중 조특령·규칙 개정 예정)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4.2월) 시 반영

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28.12.31.)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28.12.31.)

*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 선택 허용(20년간)

라. 외국인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소득령 부칙 §19②)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 현재는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

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6.12.31.)하고 대상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바.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 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 ① 소득산입규칙(IIR):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24.1.1. 시행)

②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25.1.1. 시행)

아.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3년 100% + 2년 50%

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 59 · 91)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26.1.1.이후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차.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의5 신설)

- 국내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카.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 간 공동 협의기구

※ 「2023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www.moef.go.kr) < 보도자료('23.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을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확정 여부,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u>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u>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②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③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④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⑤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⑥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⑦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⑧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사업화시설) 4개 <u>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u>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②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③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④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컴퓨터학원 등 ○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좌 동) ○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③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table border="1"> <thead> <tr> <th>특구명</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위기지역</td><td>5년 100%+2년 50%</td></tr> <tr> <td>농공단지</td><td rowspan="2">5년 50%</td></tr> <tr> <td>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tr> <tr> <td>연구개발특구</td><td rowspan="11">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td></tr> <tr> <td>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td></tr> <tr> <td>제주투자진흥지구</td></tr> <tr> <td>기업도시</td></tr> <tr> <td>지역개발사업구역</td></tr> <tr> <td>여수해양박람회특구</td></tr> <tr> <td>새만금지구*</td></tr> <tr> <td>아시아문화중심도시</td></tr> <tr> <td>금융중심지</td></tr> <tr> <td>첨단의료복합단지</td></tr> <tr> <td>국가식품클러스터</td></tr> </tbody> </table> *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5.12.31.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❶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❷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7)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①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②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개정이유〉 소득과약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 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작 성 자

■ 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고선하

KOTRA자료 23-088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 (2023년 하반기)

발 행 인		유 정 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3년 1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종합상담실 (02-3497-1059)
I S B N		979-11-402-0760-2 (95320)